

수원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12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122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용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636,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11, 12행의 “이 법원의 L은행 및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를 “제1심법원의 L은행, G은행 및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L은행, G은행 및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J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J가 원고에 대하여 101,252,318원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J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9. 13.부터 2018. 9. 10.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J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11,252,318원이 이체된 사실, J가 2024. 3. 21. 원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 102,252,318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C이 구속되면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906호 사기 사건) 피고가 2017. 4. 25.경 N을 대신하여 C을 위하여 형사공탁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9. 9. 25. 주식회사 N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N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형사공탁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N에 대하여 형사공탁금 1억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N이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매도로 인한 수익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오피스텔 임대료 상당의 대여금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오피스텔 임대료 합계 33,66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정진아, 판사 김대권